

## 1. 사업개요

- 공사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은 50억원 미만 지붕·태양광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·축사·창고 등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에 떨어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\*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떨어짐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

\*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, 추락방호망, 타워형 안전작업대, 고소작업대, 채광창 안전덮개 등

## 2. 지원자격
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\*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- \*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
  - (건설현장)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 지붕·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
    - ※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,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
  - (공장·축사·창고)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

## 3. 참여제한

-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여 제한

### <참여 제한 사유>

- ▶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(토목·건축공사에 한함)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
- ▶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▶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
- ▶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·기구·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)
- ▶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
- ▶ 당해연도 용자금 신청·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, 용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
- ▶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용자·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

## 4. 지원내용

- (지원한도) 건설현장과 공장·축사·창고 사업주\*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정함

\* 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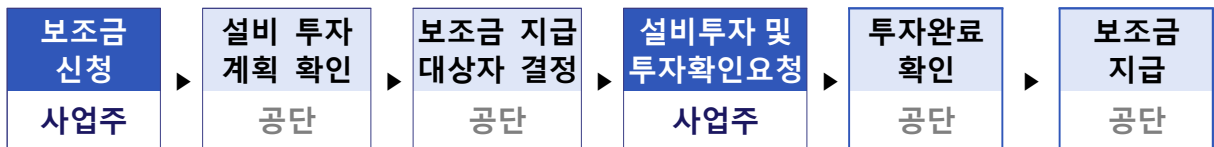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한도
건설현장	현장당 최대 3,000만원,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,000만원
공장·축사·창고 사업장	같은 사업주 당 최대 3,000만원

- (지원횟수) 당해연도 사업장(건설현장)별 1회에 한하여 지원
- (지원품목)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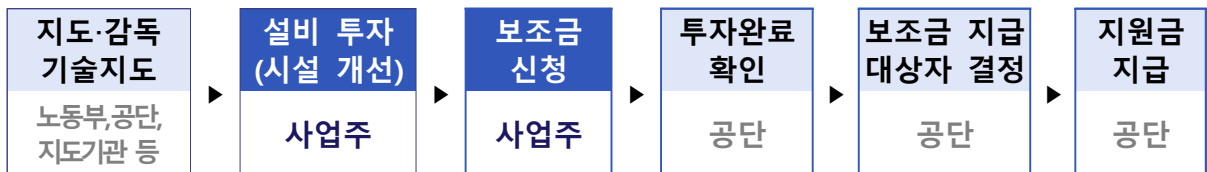
품목	대상설비
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	앵커(시작, 중간, 코너, 엔드 포함), 카라비너, 중간 가이드, 와이어 등 구성품 일체
안전대 부착설비	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, 앵커 스트랩, 빔 앵커(고정용), 빔 앵커(슬라이딩형),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(와이어형),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(로프형)
안전방망	추락방호망(고정용 지지로프 등 부속품 일체)
타워형 안전작업대	발판 1열, 2열 및 높이 1단, 2단, 3단 타워형 안전작업대로 구분
고소작업대	작업 최대높이 12m, 16m, 18m 굴절형 고소작업대로 구분

- (지원절차) 사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공단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따른 설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,
  - 고용노동부·공단 등 기술지원 시 떨어짐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전 신속지원 가능

- <기본지원절차>



- <신속지원절차>



※ 노동부, 공단, 지도기관 등 기술지도 내용 중 보조금 지원 안내 및 보조금 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속지원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, 지급되는 보조금은 공단 투자완료 확인 등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